

따라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
 기간을 설치한바 ~~앞서~~ 등기간중 자수 신고된 자 수가 상당수
 에 달하고 있어 이들 미점 장점(壯丁) 전원을 수검(受檢)하도록
 별첨 계획과 일정표(日程表)에 의하여 연합 징병검사를 연~~속~~
 실시하고자 하오니 재결을 앙청 하나이다.



안
공 고 안

서울특별시 공고제 ^{3015호} ~~3015호~~
 1944년 4월 29일 서울지구 연합징병검사를 다음과
 같이 연기 하여 실시 하니 해당 장점 전원은 지정된
 장소에 출두하여 수검하여야 한다

(2) 징모구(徵募區) 징병검사시 및 연합 징병 검사시
요 재점 관정을 받은 자

(3) 4294년도 징병접령자로서 자수신고 한 자
및 징병검사 미필자로서 자수신고 한 자

(4) 병역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해방자로서
재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

(5) 최고 징병관에게 재점을 신청한 자로서 승인
을 받은 자

(6) 공직(公職)에 왔든 자 중 징집 면제 처분을
받고 공무원 신체검사에 불응 한 자

(7) 4291년도 이후 체적등위 제3등급 합격
자로서 미입영자(未入營者) 전원

실시일경

구 별	검 사 일 경	검사일수	검 사 장	비 고
정 부	7 월 4 일	1 일	서울 중 고등학교	본기관중 공후원 있음
영 등 조	7 월 5 일	.	.	
등 배 문	7 월 6 일	.	.	
등 간	7 월 7 일	.	.	
마 로	7 월 8 일	.	.	
정 등	7 월 9 일	.	.	
외 배 문	7 월 10 일	.	.	
공 구	7 월 11 일	.	.	
조 조	7 월 12 일	.	.	
조 합	7 월 13 일	.	.	

10-5

233

307
214

안 2

년 월 일

부 시 장

경천국장
각구청장 전

등 건

서울지구 연합신체검사를 별첨 계획서 ~~에~~ ^{와 같이} 연기 실시
키로 하였으니 미검장장전원을 수검 하도록 하고 ~~공고문~~
을 발송하시 각요로 계시관에 계시하여 널리 선전 하도록 할 것

안 3

년 월 일

시

장 234

10-6

304

212

서울지하철공사구사업관 전

등 건

서울지하철연합정병검사를 별첨계획서와 같이 연기 실시
키로 하였기 통보 하나이다.

안

대우부 장관



등 건

서울지하철연합정병검사를 별첨계획서 및 일정표에 의거 실시
키로 결정 하였기 보고 하나이다.

4294년도 추가 연합검사 실시 계획서

1. 목 적

4294년도 서울지구 연합징병검사이시 각종 사유로 미검한 과
와 새로 수검할 대상자 전원을 수검시켜 징집 업무 운영
에 완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

2. 실시구역

서울특별시 일원

3. 실시기간 및 일정

관기 4294년 7월 4일부터 10일간 각김포구별
7월 13일까지

일정표는 별지와 같음

4. 장 소

서울 중.고등학교 감당

236

10-8

5. 수검대상자

1. 197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기간중 수검통지서를 받고 미검 환자 전원
2. 징모구(徵募區) 징병검사시 및 연합징병검사시 요재검 관정을 받은 자
3. 1974년도 징병적령자로서 자주신고 환자 및 징병검사 미원자로서 자주 신고 환자
4.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해당자로서 재검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
5. 최고 징병판에게 재검을 신청 한자로서 승인을 받은 자
6. 공직(公職)에 있던 자중 징집면제 처분을 받고 공무원 신체검사에 불응한 자

4. 4291 년도 이후 제격등의 제3종 중 합격자로서 미입영
자 (未入營者) 전원

6. 기 타

1. 징병검사 요령은 종전과 같다

2. 본 검사 실시 요지를 관하 각동 및 의출소 지서를 통하여
요수검자로 하여금 전원 수검 하도록 계몽 독려 하는
한편 공고문 ~~수검~~을 첨송하되 각요도 계시환에 제시
하여 전원 수검 하도록 할 것

3. 분기간중 검사장과의 경비 임무는 관할경찰서에서
담당 할 것